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討報告書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2023. 6. 20.

社會建設委員會

專門委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　　과

의안 제168호로 2023년 5월 26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,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‘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’에 대한 구 분담률을 40%에서 6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가목3)

나.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‘경로당 보수’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%에서 7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나목3)

다.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‘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’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%에서 60%로 상향함 (별표 1 제1호나목6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6. 9. ~ 2023. 6.14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조례안은**

-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,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**주요 개정내용으로**

- 안 별표1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‘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’에 대한 구 분담률을 40%에서 60%로 상향하였고,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중 ‘경로당의 보수’에 대한 구 분담률은 50%에서 70%로, ‘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·개선’은 50%에서 60%로 상향함.

○ **검토결과**

-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·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 중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·노인·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일부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의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공동주택관리법

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·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.